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단24144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5929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단241445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보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현정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김호민

변론 종결 2019. 5. 9.

판결 선고 2019. 6.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977,089원 및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14,977,089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승용차 명의 대여 관련 비용상환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촌 관계인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4. 10. 24.경 닛산 승용차를 원고 명의로 할부 구입하여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승용차의 할부금과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부득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77,089원의 할부금 또는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015-01-22	1,994,726	갑 2-1	
2015-02-26	399,279	갑 2-1	1,999,279원 중 1,600,000원은 변제
2016-06-24	1,910,308	갑 2-2	
2016-07-21	1,985,630	갑 2-3	
2017-04-12	2,008,386	갑 2-1	
2017-04-25	1,985,620	갑 2-1	
2016-05-30	1,193,140	갑 2-4	세금
합계	11,477,089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11,477,0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 또는 모친인 소외 C가 위 할부금 또는 세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가.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위 가.의 표 내역은 피고 또는 C에 의해 변제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여금 반환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8,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4. 10. 13. 변제기 정함 없이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3,000만 원, ② 2014. 11. 8. 변제기 정함 없이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3,000만 원, ③ 2015. 9. 21. 변제기 정함 없이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500만 원, ④ 2015. 9. 24. 변제기 정함 없이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3,000만 원, ⑤ 2016. 8. 9. 변제기, 이자 약정 없이 150만 원, ⑥ 2016. 11. 19. 변제기, 이자 약정 없이 2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④ 차용금에 관하여 2016. 5. 22.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9,850만 원(= ①+②+③+④+⑤+⑥) 및 그 중 9,500만 원(= ①+②+③+④)에 대하여는 위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6.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35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위 가.의 ①, ②는 차용금이 아니라 원, 피고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에 기해 진행된

채권추심사업에 투자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부합 증거들과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가.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또한 위 가.의 ③, ④는 E 또는 F가 원고로부터 직접 차용한 돈이지 피고가 차용한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앞서 든 부합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다시 E 또는 F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위 가.의 ⑤, ⑥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3호증의 9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부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송금 내역은 제1의 가.항에서 본 승용차 할부금의 변제 또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지 않는 별도 대여금의 변제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인용되는 원금의 총액은 109,977,089원(= 제1의 가. 11,477,089원 + 제2의 가. 9,850만 원)이 된다]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윤상도